

펫플래닛 서비스 이용약관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 조 (정의규정)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 ⑬ (생략)</p> <p>⑭ "중대한 사고"라 함은 서비스 이용 중 반려견에 의한 질병 전염, 물림, 위협, 공격으로 인하여 펫시터를 포함한 제3자에게 부상, 상해, 실종, 사망 등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반려견의 통제 불가능한 공격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반려견의 탈출 등 제3자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를 말합니다.</p>	<p>제 2 조 (정의규정)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 ⑬ (생략)</p> <p>⑭ <u>"펫플 메모"라 함은 의뢰인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중대한 사고의 예방, 처리 및 관리, 펫시터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서비스 요청 시 별도로 전달받은 사항(의뢰인의 반려견 특이사항, 주의사항, 그 밖에 중요 요청사항 등)과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경위, 개요 등 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록하여 펫플래닛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u></p>
<p>⑮ "펫플 메모"라 함은 의뢰인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중대한 사고의 예방, 처리 및 관리, 펫시터의 안전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서비스 요청 시 별도로 전달받은 사항(의뢰인의 반려견 특이사항, 주의사항, 그 밖에 중요 요청사항 등)과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 경위, 개요 등 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록하여 펫플래닛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p>	<p>⑯ <u>"돌봄일지"라 함은 펫시터가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려견 상태, 활동 내역, 급여·투약·배변 등 돌봄과 관련된 사실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기록물을 말합니다.</u></p>
<p>⑯ "전염성 질환"이라 함은 반려견의 질병 중 다른 동물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는 파보바이러스, 흥역(디스템퍼), 파라인플루엔자, 링웜, 피부 진균증 등을 포함하며, 그 외 수의학적으로 다른 동물에게 전파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질환을 포함합니다.</p>	<p>⑯ <u>"중대한 사고"라 함은 서비스 이용 중 반려견에 의한 질병 전염, 물림, 위협, 공격으로 인하여 펫시터를 포함한 제3자에게 부상, 상해, 실종, 사망 등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반려견의 통제 불가능한 공격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반려견의 탈출 등 제3자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를 말합니다.</u></p>
<p>⑰ "실증특례 요건"이라 함은 「산업용합축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여한 실증특례 사업 수행을 위한 승인 조건(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의견을 포함)을 말합니다.</p>	<p>⑰ <u>"전염성 질환"이라 함은 반려견의 질병 중 다른 동물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는 파보바이러스, 흥역(디스템퍼), 파라인플루엔자, 링웜, 피부 진균증 등을 포함하며, 그 외 수의학적으로 다른 동물에게 전파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질환을 포함합니다.</u></p>
<p>⑱ "노쇼(no-show)"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 펫시터 서비스 시작 시각(이하 "체크인 시각"이라 합니다) 이후 3회 이상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 두절 상태가 3시간 경과한 경우 의뢰인이 펫시터에게 예약 취소 의사를 통보한 후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p>⑱ <u>"노쇼(no-show)"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위탁 펫시터 서비스 시작 시각(이하 "체크인 시각"이라 합니다) 이후 3회 이상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 두절 상태가 3시간 경과한 경우</u> <u>의뢰인이 펫시터에게 예약 취소 의사를 통보한 후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u>

현 행	개 정 안
<신설>	<p><u>(19) "실증특례 요건"이라 함은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여한 실증특례 사업 수행을 위한 승인 조건(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의견을 포함)을 말합니다.</u></p>
<p><u>(19)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u></p>	<p><u>(20)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u></p>
<p>제 14 조 (회원의 의무)</p> <p>④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p> <p>1. ~ 14. (생략)</p>	<p>제 14 조 (회원의 의무)</p> <p>④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p> <p>1. ~ 14. (생략)</p>
<p><신설></p> <p>15. 이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p>	<p><u>15. 어플리케이션 내 대화 기능을 통해 송수신된 대화 내용(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및 그 화면(스크린샷·캡처 포함)을, 회원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 또는 이에 준하는 범위의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거나 다수인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단체방 등에 유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u></p> <p>가. 회원의 정당한 권리 구제 또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회사 고객센터, 수사기관, 법원, 변호사 등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는 경우</p> <p>나. 관계 법령에 따른 공익신고 또는 법령상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p> <p>다. 서비스 품질 및 이용 경험에 관한 후기를 요약·서술 방식으로 작성하되, 회원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식별 할 수 없도록 처리한 경우</p> <p>위 각 목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제3자의 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는 가림처리(마스킹) 등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p> <p><u>16. 이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u></p>
<p>제 16 조 (서비스의 종류)</p> <p>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1. 중개서비스 : (이하 생략)</p>	<p>제 16 조 (서비스의 종류)</p> <p><u>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u></p> <p>1. 중개서비스 : (이하 생략)</p>
<p>②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알립니다. 다만, 회사 또는 회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 우선 변경 조치를 하고 이후 해당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p>	<p>②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알립니다. 다만, 회사 또는 회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 우선 변경 조치를 하고 이후 해당 내용을 <u>통지</u>할 수 있습니다.</p>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u>제17조의2 (대화 기능의 제공 및 제한)</u></p> <p>① 회사는 의뢰인과 펫시터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예약 신청부터 위탁 펫시터 서비스 종료 전까지 어플리케이션 내 대화 기능을 제공합니다.</p> <p>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분쟁 예방 및 서비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어플리케이션 내 대화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1. 위탁 펫시터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p> <p>2. 펫시터가 휴면 또는 탈퇴한 경우</p> <p>3. 의뢰인이 채팅 제한을 요청한 경우</p> <p>4. 직거래 유도, 욕설·비방, 성희롱 등 부적절한 이용이 확인된 경우</p> <p>5. 기타 합리적인 운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p> <p>③ 대화 내용의 보관 및 파기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p>
<p>제 18 조 (실증특례 요건에 따른 펫시터 자격기준)</p> <p>6.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p>	<p>제 18 조 (실증특례 요건에 따른 펫시터 자격기준)</p> <p>6. 서울특별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규제특례 확인서의 내용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불가하여 실증특례 요건에 따른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회사는 이를 해당 펫시터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합니다.</p>
<p>제 19 조 (의뢰계약 체결)</p> <p>① ~ ⑥ (생략)</p> <p><신설></p>	<p>제 19 조 (의뢰계약 체결)</p> <p>① ~ ⑥ (생략)</p> <p>⑦ 회사는 의뢰인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필수 정보 또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둘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회사 또는 펫시터가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이 곤란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대상 반려견의 안전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해당 예약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예약 심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보완 사항을 펫플래닛 메시지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p>
<p>제 20 조 (고지의무)</p> <p>① (생략)</p> <p><신설></p> <p>② 회사는 7세 이상 노령견 및 신경, 발작 질환 등 반려견</p>	<p>제 20 조 (고지의무)</p> <p>① (생략)</p> <p>② 의뢰인이 위탁 펫시터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청사항을 회사 또는 펫시터에게 제시하는 경우, 의뢰인은 해당 요청사항을 예약 신청 시 또는 회사가 정한 절차(펫플래닛 메시지, 예</p>

현 행	개 정 안
<p>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의사 소견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u>약 정보 입력, 체크박스 등)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u></p> <p><u>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이행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청사항에는 매너벨트(기저귀) 착용 및 교체 기준·희망 횟수, 경구투약, 반려견의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일상적인 추가 관리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u></p> <p>③ 회사는 7세 이상 노령견 및 신경, 발작 질환 등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의사 소견서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③ 의뢰인이 의뢰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필수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펫시터는 회사의 중재 하에 의뢰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펫시터와 회사는 의뢰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펫시터 또는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④ 의뢰인이 의뢰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필수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펫시터는 회사의 중재 하에 의뢰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펫시터와 회사는 의뢰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펫시터 또는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④ 대상 반려견의 공격성이 강하여 펫시터, 펫시터의 소유 반려견, 함께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 타 반려견이 상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고, 이미 위탁 펫시터 서비스 중이라도 해당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상 반려견의 공격성 판단 및 위탁 펫시터 서비스 중단에 관하여 중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위탁 펫시터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예약 취소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취소 및 환불은 제21조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p>	<p>⑤ 대상 반려견의 공격성이 강하여 펫시터, 펫시터의 소유 반려견, 함께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 타 반려견이 상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고, 이미 위탁 펫시터 서비스 중이라도 해당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상 반려견의 공격성 판단 및 위탁 펫시터 서비스 중단에 관하여 중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위탁 펫시터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예약 취소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취소 및 환불은 제22조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p>
<p>⑤ 반려견이 전염성 질환을 보유하여 펫시터 또는 다른 반려견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약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전염병 예방 선조치로 해당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해당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며 회사의 중재 하에 대상 반려견은 의뢰인에게 반환됩니다. 이 경우 펫시터와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펫시터 또는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수의사</p>	<p>⑥ 반려견이 전염성 질환을 보유하여 펫시터 또는 다른 반려견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약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전염병 예방 선조치로 해당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해당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며 회사의 중재 하에 대상 반려견은 의뢰인에게 반환됩니다. 이 경우 펫시터와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펫시터 또는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수의사</p>

현 행	개 정 안
의 완치 증명서 및 전염성이 없음을 명시한 소견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시 예약을 재개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 완치 증명서 및 전염성이 없음을 명시한 소견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시 예약을 재개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의뢰인이 고지하지 않은 명백한 피부병을 펫시터가 발견하여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펫시터는 회사의 중재를 통하여 반려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펫시터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펫시터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치료비 및 실비교통비 등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의뢰인이 고지하지 않은 명백한 피부병을 펫시터가 발견하여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펫시터는 회사의 중재를 통하여 반려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펫시터가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펫시터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치료비 및 실비교통비 등 제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⑧ 의뢰인이 예약 신청 시 작성한 요청 사항 중 반려견의 건강 상태, 돌봄 방식 등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예약 확정 이후 변경한 경우, 펫시터가 그 변경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회사의 중재를 통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 취소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취소 및 환불은 제22조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⑧ 의뢰인이 예약 신청 시 작성한 요청 사항 중 반려견의 건강 상태, 돌봄 방식 등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예약 확정 이후 변경한 경우, 펫시터가 그 변경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회사의 중재를 통해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 취소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취소 및 환불은 제22조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신설>	<p><u>⑨ 위탁 펫시터 서비스 진행 전 또는 진행 중 반려견의 공격성, 전염성 질환 등 주요 정보가 의뢰인이 등록한 정보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의뢰인에게 해당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사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비스의 안전 또는 정상적인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정보가 수정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u></p>
<신설>	<p><u>⑩ 제9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의뢰인은 프로필 정보를 수정한 후 이용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정 내용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며, 거부 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46조에 따른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u></p>
제 21 조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진행) ⑨ 의뢰인은 대상 반려견, 특히, 1세 이하의 퍼피 또는 7세 이상의 노령견의 경우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의뢰계약기간 동안 및 그 이후 가정 복귀 후에도 적응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해당 적응 스트레스는 설사, 구토 등의 신체적 증상은 물론, 배변, 식습관의 일시적 변화, 활동성 저하, 분리불안 증세 등 행동 양식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펫시터와 회사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 21 조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진행) ⑨ 의뢰인은 대상 반려견, 특히, 1세 이하의 퍼피 또는 7세 이상의 노령견의 경우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의뢰계약기간 동안 및 그 이후 가정 복귀 후에도 적응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해당 적응 스트레스는 설사, 구토 등의 신체적 증상은 물론, 배변, 식습관의 일시적 변화, 활동성 저하, 분리불안 증세 등 행동 양식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펫시터와 회사의 귀책사유는 통상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펫시터

현 행	개 정 안
<p>펫시터가 돌봄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가 돌봄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⑩ 의뢰계약기간 동안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질병(선천적 및 진행 중인 관절, 슬개골 질병 등 포함)이 악화되더라도 펫시터와 회사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펫시터가 의뢰인과 합의한 돌봄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대상 반려견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⑩ 의뢰계약기간 동안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질병(선천적 및 진행 중인 관절, 슬개골 질병 등 포함)이 <u>악화되거나, 7세 이상 노령견의 경우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점진적 저하(피부 장벽 약화, 잇몸 약화 등 포함)</u>가 발생하는 경우, 펫시터와 회사의 귀책사유는 통상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펫시터가 <u>의뢰인과 사전에 합의한 돌봄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대상 반려견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신체 기능 저하가 가속화된</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⑪ 대상 반려견의 반복적인 마킹(영역 표시) 행동으로 인해 펫시터가 정상적인 위탁 펫시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펫시터는 의뢰인과의 상호 합의를 통해 서비스 기간 동안 대상 반려견에게 매너벨트(또는 기저귀)를 착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여 펫시터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의뢰인은 회사의 중재 하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러한 상호 합의에 따른 매너벨트 착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피부 트러블, 스트레스 또는 기타 불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p>	<p>⑪ <u>대상 반려견의 반복적인 마킹(영역 표시) 행동, 실내 배변 습관 또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펫시터는 위탁 펫시터 서비스 기간 동안 대상 반려견에게 매너벨트(또는 기저귀)를 착용시킬 수 있습니다.</u> 펫시터는 대상 반려견의 배변 활동 상태,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위생상 필요한 범위에서 매너벨트(또는 기저귀)를 교체 관리합니다. 의뢰인이 특정한 교체 횟수 또는 관리 기준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은 서비스 개시 전 펫시터와 명확히 합의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매너벨트(또는 기저귀) 등 물품은 의뢰인이 충분한 수량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매너벨트(또는 기저귀) 착용을 거부하여 펫시터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중재 하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p> <p>의뢰인은 매너벨트 착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상 반려견의 피부 트러블, 스트레스 또는 기타 불편 사항에 대하여, 펫시터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펫시터가 반려견의 건강과 위생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매너벨트를 관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합의되지 아니한 교체 횟수 또는 관리 기준을 이유로는 펫시터 또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p>
<p><신설></p>	<p>⑫ 의뢰인이 펫시터에게 양치질, 빗질, 눈·귀 세정 등 대상 반려견의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일상적인 추가 관리(이하 "위생 관리"라 합니다)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위탁 펫시터 서비스의 필수 제공 사항(기본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적 요청 사항에 해당합니다. 펫시터는 대상 반려견의 안전과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위생 관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위생 관리가 수의료행위 또는 전문 미용 서비스가 아님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수준의 결과(예: 완전한 치석 제거, 완벽한 엉킴 제거 등)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p>

현 행	개 정 안
<신설>	<p><u>⑬ 7세 이상의 노령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의 반려견, 잇몸·치아·피부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는 반려견, 또는 입질·거부 반응 등으로 인해 위생 관리의 정상적인 수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상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펫시터는 위생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는 의뢰계약 불이행 또는 펫시터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합니다.</u></p> <p><u>위생 관리 수행 과정에서 대상 반려견의 기저 질환으로 인한 경미한 자극·출혈 또는 일부 관리 미흡(예: 안쪽 어금니 세정 불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펫시터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u></p>
<p>⑫ 의뢰인은 7세 이상의 노령견이나 고지된 지병이 있는 반려견의 경우, 위탁 돌봄 환경과 무관하게 기저 질환의 악화나 노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또는 사망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응급상황 또는 사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펫시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해당 상황의 발생 원인이 펫시터의 돌봄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명백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u>⑭ 의뢰인은 7세 이상의 노령견이나 고지된 지병이 있는 반려견의 경우, 위탁 돌봄 환경과 무관하게 기저 질환의 악화나 노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또는 사망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응급상황 또는 사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펫시터나 회사의 귀책사유는 통상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상황의 발생 원인이 펫시터의 돌봄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명백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p>⑯ 반려견의 품종, 연령, 생활 습관 등에 따라 특정 질병 또는 질환(예: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종의 경미한 충격에 의한 골절, 단두종의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높은 가능성이 있음을 의뢰인은 인지합니다.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중 이러한 품종 특이적 질병 또는 질환이 발생한 경우, 펫시터와 회사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펫시터가 의뢰인과 합의한 돌봄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u>⑯ 반려견의 품종, 연령, 생활 습관 등에 따라 특정 질병 또는 질환(예: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종의 경미한 충격에 의한 골절, 단두종의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높은 가능성이 있음을 의뢰인은 인지합니다.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중 이러한 품종 특이적 질병 또는 질환이 발생한 경우, 펫시터와 회사의 귀책사유는 통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펫시터가 의뢰인과 사전에 합의한 돌봄 방법을 현저히 위반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p>⑭ 의뢰계약기간 동안 자연 발생하는 질병(감기, 기관지염, 기타 질환 등)의 치료비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p>	<p><u>⑯ 의뢰계약기간 동안 자연 발생하는 질병(감기, 기관지염, 기타 질환 등)의 치료비는 의뢰인이 부담합니다.</u></p>
<p>⑮ 의뢰계약기간 동안 대상 반려견에 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펫시터는 의뢰인 및 회사에 즉시 연락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u>⑰ 의뢰계약기간 동안 대상 반려견에 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펫시터는 의뢰인 및 회사에 즉시 연락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u></p>
<p>⑯ 대상 반려견의 사망사고는 지정 병원에서 부검을 통한 원인 규명 후 사후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p>	<p><u>⑯ 대상 반려견의 사망사고는 지정 병원에서 부검을 통한 원인 규명 후 사후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u></p>
<p>⑰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중 대상 반려견의 탈출 등으로 인한 실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하 생략)</p>	<p><u>⑯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중 대상 반려견의 탈출 등으로 인한 실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하 생략)</u></p>

현 행	개 정 안
<p>⑯ 펫시터가 위탁 펫시터 서비스를 이행하던 중 펫시터의 부주의가 아닌, 의뢰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돌발적 공격성으로 인하여 펫시터, 혹은 펫시터의 소유 반려견이 상해 등을 입는 경우, (이하 생략)</p>	<p>㉚ 펫시터가 위탁 펫시터 서비스를 이행하던 중 펫시터의 부주의가 아닌, 의뢰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돌발적 공격성으로 인하여 펫시터, 혹은 펫시터의 소유 반려견이 상해 등을 입는 경우, (이하 생략)</p>
<p>⑰ 위탁 펫시터 서비스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상 반려견의 상해, 질병 또는 질환, 사망, 실종 등(제3자에 의한 사고 포함)에 관하여 회사는 중개인으로서 직접적인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p>	<p>㉛ 위탁 펫시터 서비스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상 반려견의 상해, 질병 또는 질환, 사망, 실종 등(제3자에 의한 사고 포함)에 관하여 회사는 중개인으로서 직접적인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므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p>
<p>㉚ 의뢰인은 체크아웃 시각에 복귀하여 대상 반려견을 찾아가거나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㉚ 의뢰인은 체크아웃 시각에 복귀하여 대상 반려견을 찾아가거나 인도받아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㉛ 의뢰인이 의뢰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상 반려견을 찾아가지 않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 펫시터는 1주일간 대상 반려견을 평균적인 위탁 펫시터 서비스 환경에서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㉛ 의뢰인이 의뢰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상 반려견을 찾아가지 않거나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 펫시터는 1주일간 대상 반려견을 평균적인 위탁 펫시터 서비스 환경에서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㉛ 의뢰인은 제20항의 경우, 의뢰계약 체결 시 적용된 당일의 위탁 펫시터 서비스 이용대금 기준에 따라, 서비스 종료시점부터 의뢰인이 실제로 대상 반려견을 인도받은 시점까지의 초과 시간을 고려하여 산정된 위약벌을 펫시터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㉛ 의뢰인은 제22항의 경우, 의뢰계약 체결 시 적용된 당일의 위탁 펫시터 서비스 이용대금 기준에 따라, 서비스 종료시점부터 의뢰인이 실제로 대상 반려견을 인도받은 시점까지의 초과 시간을 고려하여 산정된 위약벌을 펫시터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p>
<p>㉛ 의뢰인이 제22항에 따른 추가 이용대금을 회사에 지급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펫시터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p>	<p>㉛ 의뢰인이 제24항에 따른 추가 이용대금을 회사에 지급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펫시터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p>
<p>㉛ 펫시터의 주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경우, 해당 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펫시터가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p>	<p>㉛ 펫시터의 주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된 경우, 해당 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펫시터가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p>
<p>제 22 조 (의뢰 취소 및 환불)</p> <p>⑤ 고의적 의뢰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서면, 펫플래닛 메시지,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2회 경고 시 이 약관의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p> <p>⑥ 의뢰인은 의뢰 취소 및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펫플래닛을 통해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당한 의뢰 취소 및 환불 요청이 확인되면 제2항의 환불규정에 따라 결제된 이용대금을 7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금융기관의 전산마비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p> <p>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대금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고지한 후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p>	<p>제 22 조 (의뢰 취소 및 환불)</p> <p>⑤ 의뢰인은 의뢰 취소 및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펫플래닛을 통해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당한 의뢰 취소 및 환불 요청이 확인되면 제2항의 환불규정에 따라 결제된 이용대금을 7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금융기관의 전산마비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p> <p>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대금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고지한 후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p>

현 행	개 정 안
<p>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p> <p>⑦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대금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고지한 후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p> <p>⑧ 회사는 의뢰인에게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⑥ 고의적 의뢰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서면, 펫플 래닛 메시지,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2회 경고 시 이 약관의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p>
<p><신설></p>	<p>⑦ 펫시터가 이 약관 및 의뢰계약에서 정한 필수적인 돌봄 의무를 이행하여 위탁 펫시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된 경우, 이미 제공 완료된 서비스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단순 변심, 또는 펫시터가 위 필수적인 돌봄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의뢰인의 주관적 기대와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이유로 한 이용대금의 감액 또는 환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뢰인의 주관적 기대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산책 시간 또는 경로에 대한 개인적 기대와의 차이, 놀이 또는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주관적 불만, 사진·영상 제공 빈도 또는 방식에 대한 불만, 간식 제공 여부·종류에 대한 기호 차이, 양치·빗질 등 위생 관리 결과에 대한 체감상 불만 등 객관적인 서비스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유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p> <p>다만, 의뢰인이 서비스 개시 전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펫시터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펫시터가 명확히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신설></p>	<p>⑧ 의뢰인이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치료비, 손해배상 또는 이용대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펫시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검토합니다. 객관적 증빙자료에는 진료기록, 수의사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사진, 영상 등이 포함됩니다.</p> <p>대상 반려견의 기저 질환, 노화, 자연적 증상 악화, 서비스 종료 후 환경 변화, 또는 이 약관에서 펫시터 또는 회사의 책임이 제한되는 사유로 정한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는, 펫시터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펫시터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펫시터 또는 회사의 책임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p>
<p><신설></p>	<p>제31조의2 (돌봄일지 및 산출물의 귀속)</p> <p>① 돌봄일지 및 이에 첨부된 사진·동영상 등 산출물(이하 "돌봄일지 및 산출물"이라 합니다)은 이 약관에서 정한 '</p>

현 행	개 정 안
	<p><u>게시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u></p> <p><u>② 펫시터가 위탁 펫시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작성하여 전송하는 돌봄일지 및 산출물은 의뢰인이 지급한 서비스 이용대가에 포함된 결과물로 보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해당 돌봄일지에 관한 권리는 해당 서비스를 결제한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u></p>
<p>제 36 조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등)</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 해지하기 전에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 <p>1. ~ 9. (생략)</p> <p>10. 회원이 서비스 시작시간 144시간 전부터 의뢰계약 취소, 의뢰계약 체결 후 60분 이내취소, 특정 펫시터에 대한 의뢰계약 취소 행위를 3회 이상 연속적으로 하는 등 고의적인 의뢰계약 취소 행위를 반복하여 회사가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경고하였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p> <p>11. 다른 회원 및 그 가족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폭언, 욕설, 협박, 비하 발언(특정 지역, 성별, 연령, 외모, 학력, 직업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낮추어 보거나 깔보는 발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성희롱 등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p> <p>12.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p>	<p>제 36 조 (회사의 계약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등)</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용계약 해지하기 전에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과 회사 또는 펫시터 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사실관계 확인 또는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취해지는 잠정적 이용제한에 관하여는 제8항에 따릅니다.</p> <p>1. ~ 9. (생략)</p> <p>10. 회원이 서비스 시작시간 144시간 전부터 의뢰계약 취소, 의뢰계약 체결 후 60분 <u>이내 취소</u>, 특정 펫시터에 대한 의뢰계약 취소 행위를 3회 이상 연속적으로 하는 등 고의적인 의뢰계약 취소 행위를 반복하여 회사가 <u>제22조 제6항</u>에 규정된 방법으로 경고하였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p> <p>11. 의뢰인이 위탁 펫시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 약관에 따른 회사의 검토 결과, 회사 또는 펫시터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환불, 보상 또는 분쟁 해결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그 횟수와 경위 등에 비추어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 또는 분쟁 처리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p> <p>12. 다른 회원 및 그 가족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폭언, 욕설, 협박, 비하 발언(특정 지역, 성별, 연령, 외모, 학력, 직업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낮추어 보거나 깔보는 발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성희롱 등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p> <p>13. 회원이 제14조 제4항 제15호를 위반하여, 위탁 펫시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 내 대화 기능을 통해 송수신된 대화 내용 또는 그 화면을, 회원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 또는 이에 준하는 범위로 외부에 게시·유포하는 경우</p> <p>14. 기타 회원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p>

현 행	개 정 안
	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p>② 회사는 제1항 제11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의 경증과 반복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p> <p>1. 1차 위반: 경고</p> <p>2. 2차 위반: 최종 경고 및 이용제한 (7일)</p> <p>3. 3차 위반: 이용제한 (30일)</p> <p>4. 4차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 강제 탈퇴 및 영구 이용제한</p>	<p>② 회사는 제1항 <u>제12호</u>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의 경증과 반복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p> <p>1. 1차 위반: 경고</p> <p>2. 2차 위반: 최종 경고 및 이용제한 (7일)</p> <p>3. 3차 위반: 이용제한 (30일)</p> <p>4. 4차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 <u>이용계약 해지</u> 및 영구 이용제한</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e-mail), 전화, 팩스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 또는 이용제한 등의 조치 사실을 고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	<p>③ <u>제1항,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해제, 해지, 이용제한 또는 잠정적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e-mail), 전화, 펫플래닛 메시지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고지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u></p>
<p>⑥ 이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미 구매 확정된 거래 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습니다.</p>	<p>⑥ 이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미 구매 확정된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p>
<p>⑦ 회사의 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회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p>	<p>⑦ 회사의 해제, 해지 또는 이용제한 조치 등에 대하여 회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p>
<p><신설></p>	<p>⑧ 회사는 회원과 회사 또는 펫시터 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사실관계 확인 또는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분쟁의 원활한 해결 및 추가 분쟁 또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는 별도로, 분쟁이 종결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회원의 신규 예약 신청 또는 일부 서비스 기능의 이용을 잠정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하여 이와 같은 잠정적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행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확인 절차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른 회사의 검토 결과 회사 또는 펫시터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환불, 보상 또는

현 행	개 정 안
	<p><u>분쟁 요청이 반복되어 분쟁의 장기화 또는 추가 발생 우려가 큰 경우</u></p> <p><u>3.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서비스 질서 또는 안전한 이용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u></p> <p><u>본 항에 따른 잠정적 이용제한은 원칙적으로 분쟁 발생 이전에 이미 체결·확정된 예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제한을 해제하여야 합니다.</u></p>